

김포시폐기물처리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26일 김포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1일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1월 5일
라. 의결일자 : 2004년 11월 9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(2004.2.9 법률 제7169호)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,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및 비용 명시(안 제3조, 제4조)
-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명시(안제5조, 제6조,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 개정(2004. 2. 9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

택 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주변지역을 정하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
- 이를 근거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조항을 두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주변영향지역 지역 지원 등을 명문화 하여 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